

# 올해부터 바뀌는 것

## 세금·공공요금

### ● 근로소득 면세점인상

근로소득자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이 현행 4인가족 기준 연 4백 4만원(월 43만원)에서 5백 13만원으로 인상된다. 5인가족 기준으로는 연 4백 60만원(월 38만원)에서 5백 81만원(월 49만원)으로 오른다.

또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현행 일당 2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.

### ● 근로소득 공제한도액 인상

현행 2백 30만원에서 4백 90만원으로 인상되며 현재 1백 40만원미만은 전액, 1백 40만~4백만원까지는 25%, 4백만원 초과는 15%를 공제받고 있는 것이 2백 30만원이하는 전액, 2백 30만원 초과는 30%를 공제받는다.

### ● 근로소득 세액공제

현재 월급여 1백만원을 기준으로 80여만원 한도내에서 30~40% 공제하고 있는 것을 연간 총급여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50만원 한도내에서 20%를 공제한다.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5%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 24만원이내에서 의료비가 공제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1백만원으로 인상된다.

### ● 실명금융자산 세율인상

현행 17%(교육세 포함)에서 20%로 상향조정되며 비실명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53%에서 60%로 인상된다.

### ● 특별공제제도 신설

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신설돼 월평균 1백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 1백만원 한도 연 54만원 한도안에서 세액공제하고 경로우대공제액은 현행 연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른다. 퇴직소득 공제액은 현행 5년 이하 30만원, 20년 초과 2백 15만원(연 25만원 추가)에서 5년 이하는 50만원, 20년 초과는 4백 25만원(연 50만원 추가)로 상향조정된다.

### ● 세금우대 가계저축한도 인상

현행 5백만원에서 8백만원내로 높아지며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의 30%한도내에서 불입하는 3년이상 장기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는 이자·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.

### ● 상속세 인상

기초공제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공제(현행 4천만원)는 1억원에 다 결혼년수에 6백만원씩을 곱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으로 대폭 인상된다.

상속세의 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고액상속자 사후 관리제도가 신설돼 5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5년후

에 재산점검을 한다.

### ● 양도소득세

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 이외에 지금까지는 전액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는 전액면제, 사업 인정고시 5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수용시는 70%, 기타 수용시는 50%를 감면해 준다.

### ● 주택재산 세율인하

최저 과세표준단계가 1천만원으로 조정돼 서민주택의 세부담이 경감된다.

## 호적 주민등록 인감

### ● 주민등록제도 개선

주민등록 전산화에 읍면동사무소 단위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전산 처리된다.

전산처리 업무는 주민등록 등·초본·주민등록열람, 국외이주 신고필증,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등이다.

동일한 읍면동 관내에서 전출입 할 때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, 주민등록 열람과 등·초본 교부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제한된다.

### ● 인감 재신고

주민등록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감대장이 새로 작성되게 돼 이미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3월 2일부터 인감을 재신고해야 한다.

## 통신·교통

### ● 국민연금제도 확대

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국민연금제가 7월부터 5~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.

### ● 의료보호 본인부담률 인하

2종 보호대상자들이 대도시에 입원할 경우 40%이던 부담률이 30%로, 의료보험대상자가 입원 할 때는 50%이던 것이 40%로, 외래는 67%에서 57%로 각각 10% 인하된다.

### ● 서울시립병원 이용개선

카드소지자의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입원보증금도 6만원으로 단일화된다. 3종카드 소지자는 보증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되며 보증금은 1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된다.

### ● 농어촌전화사업 확대지원

5호이상의 벽지 및 50호 이상의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기존자가 발전시설을 개체할 경우 소요 공사비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한국전력이 부담, 주민은 호당 2만5천원만 내면된다.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경우 도서주민은 전기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·도 및 한국전력이 보조한다.

## 주택·토지

### ● 토지기록 전국 온라인화

토지·임야대장·등본발급 및 열람이 전국 시·군·구에서 가능해진다.

### 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의무화

소유권이전 계약체결시 반대급부이행 완료일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한다.

이전등기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.

### ● 국민주택규모건설 의무비율 조정

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25.7평 이하)아파트 비율이 총건설호수의 60% 이상에서 80%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.

### ● 상속토지 공시지가 적용

토지에 대한 중여세, 양도소득세에 이어 상속세에도 공시지가가 적용돼 세금이 산출된다. 즉, 실제거래가액이나 감정가, 보상가 등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다.

### ●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전산서비스 확대

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동세액계산 전산서비스가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된다. 이 전산서비스는 민원인이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에 입력하면 1분이내에 납부해야할 양도세액이 자동 산출되도록 한 것으로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는도 이용할 수 있다.

### ● 중형�行좌석버스 운행

서울도심과 변두리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17인승 중형좌석버스 2백대가 운행된다. 요금은 1천 4백원내외다.

### ● 시내통화시분제 확대시행

3분 통화시마다 25원씩 부과되는 시내통화요금시분제가 성남, 의정부, 안산, 구리, 청주, 포항, 진주, 전주, 제주, 여수, 목포 등 11개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.

평택, 구미, 원당, 이리, 군산, 천안 등 6개지역도 91년중 지역별로 8급지(전화시설 10만회선 이상)로 승격되는 시점부터 시분제가 적용된다.

이에 따라 시분제 실시지역은 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 등 10개지역에서 총 2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.

### ● 종합유선방송(CATV) 시범방송실시

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단지 1만세대를 대상으로 TV 10개 채널, FM라디오 5개채널, 정보통신서비스 3개채널을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 시범방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### ● 공중전화증설

관리용 공중전화 1천 5백대와 카드식 공중전화 7천대 등 모두 2만 2천대의 공중전화가 증설되고 관리용 2만 4천 9백 60대, 카드식 7천 8백대가 개설된다. ⓥ